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7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기구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별도 청사 필요시 신청사 건립 이전에도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신설 기구개편 등으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정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제4조제5호)

III. 검토의견

- 건물 노후 및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 5월 신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기금 조성액은 2003년이후 현재까지 시비지원 포함하여 104억 2,424만 2천 원을 적립하였으나, 구 재정형편상 2006년에는 적립을 유보하는 등 당초 용역 기준 총 사업비 840억원의 12.4%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적립기간	합 계	원 금			이 자
		소 계	구 비	시 비	
2003. 11 ~ 2006. 6	천원 10,424,242	천원 10,014,841	천원 6,500,000	천원 3,514,841	천원 409,401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등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신청사 건립이전이라도 기 적립된 기금을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를 관리·운용하여야 하므로(법 제2조, 제5조제1항), 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예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는 만큼(법 제16조)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개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달리 동 기금과 같이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직접 조례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경우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제·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15조), 원금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상당이자 또는 목표한 기금이 조속히 적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연이 이루어진다면 기금목적유지를 위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기금의 운용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법 제8조, 제11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곧바로 집행은 불가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별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 보다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여유자금 통합에 따른 위험의 집중현상 등 부작용과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6. 5. 24, 법률 제7957호)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2005. 8. 4, 법률 제7664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 2003. 10. 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사 (이하 "구청사"라 한다)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1. 구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